

[]농약품목 []원제 수입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		6월	
신청인	법인명(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
	대표자 성명		수입업등록번호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
신청내역	농약품목명(원제명)		상표명(농약품목에 한함)
	이화학적 성질·상태		
	유효성분(주요성분)의 종류 및 함유량		
	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		
	용도 ☐ 시험용·학술연구용 농약 ☐ 시험용·학술연구용 원제 ☐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·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 ☐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		
	판매 대상자		
	수입 및 판매 예정 수량	수입 및 판매 예정 기간	
	수출국가	수출자(그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)	
	농약품목(원제)의 위험성·유해성에 관한 내용·해독방법과 보관·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(별지 작성)		
제조처방 및 원제공급처(농약품목만 해당한다) (별지 작성)			

본인의 이-메일,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? []예 []아니오

「농약관리법」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$\frac{1}{2}$ $\frac{1}{2}$ $\frac{1}{2}$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(시험용·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	수수료
	2.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, 수입·판매량 등 수입·판매 계획 3. 물질안전보건자료 4.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(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 5.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시험용·학술연구용인 경우는 제외한다) 6.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(시험용·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	별표7에 따름

처리절차

